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5006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변론 종결2022. 3. 10.

판결 선고2022. 5. 12.

주 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2020. 9. 4.자 250,000,000원, 2020. 9. 10.자 2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에 대출해주는 각 여신거래약정 및 마이너스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3. 4. 16.	(마이너스대출) 일반자금-D	1,170,000,000원	2020. 10. 16.
2	2016. 4. 15.	구매자금대출(B2B 기업구매자금대출)	750,000,000원	2021. 4. 9.
3	2016. 4. 15.	구매자금대출(기업구매자금대출)	400,000,000원	2021. 4. 9.

나. C은 위 표 순번1 기재 대출약정(이하 '마이너스 대출'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2020. 10. 17.경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21. 6. 7.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1	(마이너스대출) 일반자금-D	1,113,083,600원
2	구매자금대출	81,415,705원
3	구매자금대출	39,529,937원
합계	1,234,029,242원	

다. C은 사내이사 E의 아내인 피고에게 2020. 9. 4. 250,000,000원, 2020. 9. 10.

200,000,000원(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금원지급행위는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설령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명목이라 하더라도 C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C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무렵인 2020. 8.경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3,276,000,000원 상당(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53쪽)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피고 주장대로 671,221,465원 상당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937,421,617원 상당의 동산 재고 등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 C은 이 사건 금원의 각 지급일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4. 25.부터 2020. 6. 5.까지 C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매 송금시마다 위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 ② 위 차용증에는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C은 2017. 5. 3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증의 기재와 일치하는 금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③ 또한 C은 '거래처 피고', '계정과목 단기차입금'으로 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은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내역과도 동일한 점, ④ 피고는 2017. 4. 25.부터 2020. 6. 5.까지 C에 합계 2,0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1. 2.부터 2020. 9. 10.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010,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1,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C은 대출금이 10억 원에 이르는 마이너스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만료일(2020. 10. 16.)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였던 점, ② 그런데 C은 2020. 9. 초경 매출처인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바로 피고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일시에 완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액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2020년 초경부터 이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는 C의 사내이사인 E의 아내이자 C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상 사정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C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물론 C이 2020. 8. 7.부터 2020. 10. 28.까지 피고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20. 12.경까지 I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수십 곳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위 돈을 모두 합치더라도 393,000,000원 가량에 불과한바(C이 위 기간 동안 송금한 금액은 합계 610,000,000원 가량이나, 위 돈에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원천세환급금 등 합계 21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단일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450,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변제의 의사였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⑤ 나아가 피고는 2020. 3. 5.과 2020. 4. 29. C에 빌려준 대여금 합계 450,000,000원을 2020. 9. 4.과 2020. 9. 10.에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20. 3. 5.자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바,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위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한편, 피고는 큰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퇴직급여 등 합계 1,242,229,497원을 피고 예금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돈을 C에 대여하였는바, 위 돈의 출처를

고려할 때 사실상 위 돈의 절반은 E 소유의 돈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회계자료인 C 재무제표의 '단기차입금' 항목에 피고의 대여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대표자 E는 피고 계좌를 통해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 없이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C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C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¹⁾,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숙

판사신유리

판사이학영

1) 원고는 4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에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른다.